



새만금개발청

수신 (주)산하첨단소재
(경유)

제목 주식회사 산하첨단소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계약 해지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산하첨단소재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로 14, 301호(고잔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 체결 후 법정기간(3년) 이내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함 ·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됨 ·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계약 해지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계약서(2022.3.29. 체결) 약정 제6조 및 제17조 					
청문실시	기관명	새만금개발청	부서명	산업단지입주관리단	담당자	정나래
	주소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전화번호	063-733-1253
	일시	2026년 4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장소	1층 웰컴스페이스 미팅룸-2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사 김영욱 사무소			
	성명	김영욱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께서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